

정 부 합 동 감 사 결 과

시 정 요 구

제 목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운영·관리 부적정

기 관 명 울산광역시

내 용

「화학물질관리법」 제2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9조의 규정에 따르면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을 설치·운영하려는 자는 사전에 화학사고 발생으로 사업장 주변 지역의 사람이나 환경 등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한 유해화학물질 화학사고 장외영향평가서(이하 “장외영향평가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해당 시설의 설치공사 착공일 30일 전에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되어 있다.

같은 법 시행규칙 부칙 제6조제2항¹⁾, 제3항²⁾의 규정에 따르면 2015. 1. 1. 이 규칙 시행 당시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을 설치 중인 자는 제19조의 개정 규정에도 불구하고 2015. 12. 31.까지 장외영향평가서를 제출하도록 되어 있다.

같은 법 제5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의 규정에 따르면 환경부장관은 같은 법 제23조에 따른 화학사고 장외영향평가서의 접수 및 적합 여부 통보 등의 권한을 화학물질안전원장에게 위임한다고 되어 있다.

같은 법 제26조의 규정에 따르면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을 설치·운영하는

1) 「화학물질관리법」시행규칙 시행(2015.1.1.) 전에 종전의 「유해화학물질관리법」에 따라 취급시설을 설치한 자 중
가. 유해화학물질 연간사용량이 100톤 이상인 경우는 2018년 12월 31일까지 유예
나. 유해화학물질 연간사용량이 100톤 미만인 경우는 2019년 12월 31일까지 유예
2) 이 규정 시행당시(2015.1.1.)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을 설치 중인 자는 2015년12월31일까지 제출

자(가동중단 또는 휴업 중인 자를 포함한다)는 주1회 이상 해당 유해화학물질의 취급시설 및 장비 등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점검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5년간 기록·비치하도록 되어 있다.

같은 법 제59조의 규정에 따르면 제26조제1항을 위반하여 취급시설 및 장비 등을 점검하지 아니하거나 그 결과를 5년간 기록·비치하지 아니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되어 있다.

울산광역시 ○○○○과에서 운영·관리 중인 1일 하수처리용량 500톤 이상의 공공하수처리시설 8개 중 아래 [표1]과 같이 4개의 공공하수처리시설에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이 설치되어 있다.

○○○ 공공하수처리시설(100,000톤/일)은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인 탈취시설을 2014. 11.부터 2015. 1. 25.까지 설치하여 2015. 1. 26. 가동개시 및 운영 중에 있고, ○○ 공공하수처리시설(100,000톤/일)은 2013. 2. 27.부터 2016. 2. 26.까지 설치(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포함)하여 2016. 2. 27. 가동개시 및 운영 중에 있다.

○○○ 및 ○○ 공공하수처리시설은 「화학물질관리법」 제2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부칙 제6조의 규정에 따라 2005. 1. 1. 법 시행 당시에 설치 중인 처리시설이다.

따라서 울산광역시 ○○○○과는 2015. 12. 31.까지 장외영향평가서를 화학물질안전원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그러나 위 관서에서는 정부합동감사 시까지 장외영향평가서를 제출하지 않고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을 운영 중에 있다.

그리고 「화학물질관리법」 제26조의 규정에 따르면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을 설치·운영 시에는 주1회 이상 해당 유해화학물질의 취급시설 및 장비 등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점검을 실시하고 점검대장에 기록·관리 하여야 한다.

그런데 위 관서에서는 ○○(100,000톤/일) 및 ○○(45,000톤/일) 공공하수처리시설의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및 장비 등에 대하여 정기적인 점검 및 점검대장을 기록·비치하지 않고 있다.

[표1] 공공하수처리시설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현황

시설명	용량 (톤/일)	가동일	취급 시설	취급 물질	사용량 (kg/년)	설비현황	감사 시 지적사항	
○○	250,000	2008.8	실외 저장 시설	수산화 나트륨 (NaOH)	677,643	약품저장조 (75㎡)	-	-
○○○	100,000	2015.1.26	탈취 설비	수산화 나트륨	22,540	약품저장조 (11㎡)	장외영향 평가서 미제출 (2개 시설)	-
○○	100,000	2016.2.27	탈취 설비	수산화 나트륨 (고상)	475	약품저장조 (3㎡)		자체점검 미실시 (2개 시설)
○○	47,000	2012.9.14	탈취 설비	수산화 나트륨	13,410	약품저장조 (30㎡)	-	

※ 울산광역시 제출자료 재구성

조치할 사항 울산광역시장은

[시정] ① ○○○ 및 ○○ 공공하수처리시설에 설치된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에 대한 유해화학물질 화학사고 장외평가서를 작성·제출하고, 농소 및 굴화 공공하수처리시설의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및 장비 등에 대하여 관련 법령에 따라 주 1회 이상 정기적인 점검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5년간 기록·비치하시기 바랍니다.

②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이 설치된 공공하수처리시설을 민간위탁 운영하더라도 관리·감독에 대한 책임이 있으므로 취급시설로 인한 화학사고 예방을 위해 관련 법령 준수여부에 대한 책임을 다하여 향후 동일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 업무를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